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13
------	------

2014. 2. 26.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7일, 이경애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4.2.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경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내외 경제사정의 악화와 고용없는 성장,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 양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통합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자유시장경제하에서 협동조합은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어, 서울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신설).
-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실적을 공개토록 함(안 제12조의2제2항신설).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안정적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통합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조직인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나. 협동조합에 대한 구매 촉진(안 제12조의2)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과 구매, 판매 등을 협동으로 영위해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임.
- 서울시(이하 “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1월 20일까지 모두 1,000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 되어 활동중에 있음.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64개), 교육·서비스업(162개), 출판·영상·정보서비스업(80개), 예술·스포츠(79개)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시는 최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제고와 설립 지원에서 벗어나 맞춤형 경영지원, 상담지원센터 기능강화, 우수 사례 발굴과 확산 등으로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음.
- 이와 함께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3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을 통해 각종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 622억원을 구매하기도 하였음.

〈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실적

(단위 : 억원)

실적 현황	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13년 실적	622	115	403	104
‘12년 실적	440	89	276	75
‘11년 실적	116	6	69	41
‘10년 실적	44	2	42	-

-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취약과 품질 미흡 등으로 유통 경로가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상당 기간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 안 제12조의2 신설은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와 산하기관의 우선 구매 동기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과 쇼핑몰 확대 등을 통해 공공구매에 한정된 협동조합의 판로를 민간소비 시장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지원)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p>	<p>제12조(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삭제></p>
<p><신설></p>	<p>제12조의2(우선 구매 등) ① 시장 또는 시 산하기관의 장은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 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추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며, 민간위탁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p>